

##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준수상황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본점소재지 : (주소)  
(전화)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 (직책)                      (성명)  
(전화)

(붙임)

## 감사인 지정 유예요건 준수여부 점검결과

### I. 개요

1. 회사명	
2. 회사 고유번호	
3. 법인등록번호	
4. 본점 주소지	(우편번호: )
5. 지정 유예 통지 수령일	YYYY.MM.XX.
6. 지정 유예요건 준수여부 점검일	YYYY.MM.XX.
7. 대표자명	( 서명 )
8. 감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

### II. 지정 유예요건 준수여부 점검내용

#### 1. 신청자격

구분	내용	준수여부	근거
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1)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나. 감사인 지정 이력 여부	2)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여부		

#### 2. 결격사유

구분	내용	준수여부	근거
가. 회계신뢰성 결여 여부	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2) 최근 3개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3)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제3호에 따른 감리를 받고 있는지 여부		
나. 법령 위반 여부	1) 직전 3년 이내에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실 공시 여부		
	2) 직전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는지* 여부 *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에 따른 벌칙,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3) 직전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132조·제146조제2항·제151조제2항·제158조제2항·제164조제2항·제165조의18 또는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 제429조·제429조의2·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 및 제448조에 따른 벌칙,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		

#### 3. 평가항목

구분	내용	준수여부	근거
----	----	------	----

가. 감사기능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2) 감사위원회위원 전원 사외이사 여부		
	3)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나. 감사기구의 전문성	4)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5)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여부		
	6)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장 선임 여부		
다. 회계·감사 시스템의 실효성	7) 회계·감사지원조직의 규모		
	8) 회계·감사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의 근무 연수		
	9)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 회계전문가 근무 여부		
	10)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임원 여부		
	11) 감사위원회의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평가 및 임면 동의(협의)권 보유 여부 및 불이익조치 방지 여부		
라.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12) 감사인 선임 및 공모(公募)절차의 투명성		
	13)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마. 회계 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15) 회사의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진한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		

### 기재상의 주의

1. 신청자격, 결격사유 및 평가항목의 세부내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제2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다.
2. 점검결과 유예요건을 유지한 경우 “준수”, 그렇지 않은 경우 “미준수”(일부 미준수 포함)로 표시하고, 그 근거를 기재한다. 지정 유예 신청 시 확약서 등 제출을 통해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은 회사는 확약사항을 이행하였거나 확약서의 이행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준수”, 이행예정일이 도래하였으나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준수”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Ⅲ. 확약 사항 이행여부 점검결과”에 작성한다.
3. 점검결과 “준수”로 판단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기재한다.
4. 점검결과 “미준수” 항목에 대해서는 “Ⅳ. 미준수 사항 보고”에서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Ⅲ. 확약 사항 이행여부 점검결과

평가항목	미충족사항	향후 이행 계획	이행완료 (예정)일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지정 유예 신청 시 확약서 등 제출을 통해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 확약서의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충족사항, 향후 이행 계획, 이행완료(예정)일 등 점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확약 사항의 이행 완료 시 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IV. 미준수 사항 보고**

**1. 미준수 사항**

**2. 미준수 사유**

**기재상의 주의**

1. 점검결과 유예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여 미준수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자세히 작성한다.